◎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9-1호

전농동 103번지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03번지 일대(전농9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위제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19년 1월 3일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
1. 행위제한 대상지

가. 위 치 : 전농동 103번지 일대(전농9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)

나. 면 적 : 4.55ha

2. 행위제한 사유 및 대상

해당지역은 「서울시 고시 제2004-204호(2004.06.25)」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이며,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으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(행위제한)에 의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행위를 제한함.

- 건축물의 건축
- 토지의 분할

3. 행위제한 제외 대상

- 천재지변에 따른 보수공사 관련

4. 행위제한 기간

- 고시일로부터 3년간

  (단, 시(市)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 여부 불가 결정시 즉각 제한 해제 예정)

5. 관계도면

- 붙임 “행위제한 구역도” 참조

6. 안내사항

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동대문구 주택과(☎ 2127-4673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행위제한 구역도